

1994년도 충청북도

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(안)

(의회사무처소관)

검 토 보 고 서

운 영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목

차

1.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(안) 규모 160
2.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(안) 규모 161
3. 검 토 보 고 162

1.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(안) 규모

(단위 : 천원)

위원회 및 실 국 별	예 산 액		기 정 예 산 액		증 감	
	금 액	%	금 액	%	금 액	%
합 계	514,520,521	100	422,851,157	100	91,669,364	100
· 공보관실	781,789	0.1	766,908	0.2	14,881	1.9
· 국제협력 통상실	205,907	-	146,845	-	59,062	40.2
· 기획관리실	41,451,143	8.1	40,591,760	9.6	859,383	2.1
· 지역경제국	21,913,678	4.3	12,525,029	2.9	9,388,649	74.9
· 내 무 국	88,955,481	17.3	82,614,534	19.5	6,340,947	7.7
· 민 방 위 국	758,853	0.1	757,053	0.2	1,800	2.3
· 소 방 본 부	19,358,002	3.7	19,363,662	4.5	△ 5,660	-
· 공무원교육원	1,414,404	0.3	1,414,404	0.3	0	-
· 도민교육원	1,304,031	0.2	1,304,031	0.2	0	-
· 증평출장소	16,164,376	3.1	15,678,366	3.7	486,010	3.1
· 보사환경국	35,405,125	6.9	34,297,401	8.1	1,107,724	3.2
· 가정복지국	20,922,480	4.1	21,048,926	5.0	△ 126,446	0.6
· 농 정 국	86,654,181	16.8	85,224,483	20.1	1,429,698	1.7
· 농촌진흥원	14,382,714	2.8	11,427,661	2.7	2,955,053	25.8
· 건설도시국	162,161,326	31.5	93,033,342	22.0	69,127,984	74.3
· 의회사무처	2,687,031	0.5	2,656,752	0.6	30,279	1.1

○ 199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(안) 총규모는 기정예산 4,228억 5,115만 7천원보다 21.7%인 916억 6,936만 4천원이 증액된 5,145억 2,052만 2천원임.

2.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(안) 규모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항	세 항	사 항			
지방의회 운영	의사운영		2,687,031	2,656,752	30,279
		기관운영	1,755,363	1,768,952	△ 13,589
		의사관리	1,604,870	1,621,570	△ 16,700
			91,543	88,432	3,111
	의정활동		931,668	887,800	43,868

-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회사무처 세출예산(안)은 기정예산액 26억 5,675만 2천원보다 1.1%인 3,027만 9천원이 증액된 26억 8,703만 1천원 규모임.
- 도 전체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(안) 5,145억 2,052만 1천원의 0.52%를 점하고 있음

3. 검토의견

○ 의회사무처의 금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(안) 규모는,

기정예산 26억 5,675만 2천원 대비 1.1%인 3,027만 9천원이 증가된
26억 8,703만 1천원임.

○ 사항별 내역을 살펴보면,

· 기관운영으로는

- 일반수용비 (의정백서 발간) △ 1,750만원

- 자산취득비 (선풍기 8대 구입) 80만원

· 의사관리로는,

- 재료비 (정기의회 속기사인부임) 183만 6천원

- 보상금 (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보상) 127만 5천원

· 의정활동에서는

- 보상금 (의원일비, 여비 단가인상분) 4,386만 8천원이

계상되었음.

○ 증액된 예산은 인건비와 보상금등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경비가
주된 증액요인인바,

의사운영이나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등이 예산에
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
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됨.